의안번호	제 412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제 283 회

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9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412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○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○ 충북미래관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-64에 둠 (안 제2조)

○ 충북미래관의 기능 (안 제3조)

-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
- 투자유치와 국회,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
-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○ 위탁운영 (안 제4조)

-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함.
- 도지사는 위탁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
○ 사용료의 부과 (안 제6조)

-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"」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.

- 시설과 물품의 무상사용 규정 마련

· 충북학사 기숙사 기능수행 등을 위한 수탁법인

·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

· 도 및 기초단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○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

- "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"를 일부 개정

· 제2조 위치를 "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"에서 "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-64 충북미래관 내"로 변경

· 제8조제3항을 삭제

□ **의안전문 : 붙임**

□ **관련법령 발췌 : 붙임**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북미래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-64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
2. 투자유치와 국회,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
3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탁관리) 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(이하 "수탁법인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법인의 책무) 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용료의 부과) 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
2.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
3.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“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 번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-64 충북미래관 내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(채무)”를 “(책무)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】

제20조(수탁재산의 관리)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·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75조(무상 대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.

1.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